

개인 미디어와 인격권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I. 서론-배경과 목적

2008년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를 뒤흔든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 파문에 따른 촛불시위는 개인 미디어의 위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드러낸 신종 미디어 사건이었다. ‘일인 저널리즘’, ‘스트리트 저널리즘’ 등의 새로운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급변하는 매체환경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의 졸속성과 불가피성 등을 두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 속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형태는 그 자체로 주목을 받았고 시위를 확산, 지속하는 동력이 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상 중 하나는 소위 ‘디지털 게릴라’의 등장이었다.

쇠고기 촛불집회에서는 일반시민이 거리에 가지고 나온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문자메시지의 위력이 제도권 언론을 압도했다. 일명 ‘스트리트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개인 미디어들은 제도권 언론이 사회적 현상의 진단을 위해 제공하는 프레임에 거부했다. 자신의 시각으로 현장에서 생

산해 낸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정보유통 양상을 뒤바꿔 놓았다. 이들은 때로는 시위 참가자면서 동시에 정보 전달자 역할도 자처했다.

과거의 집회가 주도세력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데 비해 2008년의 촛불집회의 주요 특징은 주도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뒤늦게 ‘광우병 대책범국민회의’ 등의 조직이 구성됐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범국민대책회의 집행부는 법적 처벌대상이 돼 하나둘씩 구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배대상이 돼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역할을 한 것도 없는데 법적 중징계 대상이 된 아이러니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상명하달식 결집과 운영이라는 기존 집회의 일반적 형태를 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진행의 모습을 갖춘 것은 개인 미디어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전자 민주주의(e-민주주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생산해 낸 정보 중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 요소를 걸러내지 못한 상태로 제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개인의 신분이 함부로 노출되기도 했다. 소문 수준의 각종 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실의 공표와 퍼나르기로 인해 ‘여대생 사망설’, ‘전경의 성폭행설’ 등이 급속도로 퍼지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08년 7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때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은 무너졌다. 이제는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년 동안 모든 사회부문과 집단의 욕구가 제한 없이 분출됐다. 무질서한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한 해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 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꿈인 선진강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정국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번 미국 쇠고기 파문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과감하게 바로잡겠다. 다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쇠고기 시위 때문에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진단하는 동시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법치주의, 국가기강 훼손 이면에 바로 일인 미디어를 통한 쇠고기 시위의 확산과 차단 실패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통실패도 인정하고 있다.

소통의 수단은 늘어났지만 소통은 단절됐다. 미디어는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그 역할에 실패했다.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사과와 반성이었다. 이 글은 쌍방향을 거부한 일방통행식의 흐름, 기성 미디어의 한계를 질타하며 등장한 ‘스트리트 저널리즘’과 개인 미디어가 향후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개인 미디어의 폐단을 줄이고 그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미디어의 명과 암 △개인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법제적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인 미디어의 출현에는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기성 미디어의
실패에 있어

II. 본론-쟁점 및 논의

1. 개인 미디어의 명과 암

개인 미디어가 나오는 데는 반드시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성 미디어의 실패에서 찾는다. 기성 미디어가 제 역할을 충실히하며 시위자들의 요구와 분노를 정확히 전달했다면 개인 미디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기성 미디어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는커녕

거꾸로 이들을 ‘친북세력’, ‘좌파’ 등으로 이념적 색깔을 뒤집어씌웠다. 대다수 순수한 입장에서 쇠고기 협상의 졸속을 비판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검역주권을 요구했던 시위자 다수를 이처럼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기성언론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일인 미디어는 등장했고 오히려 각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불리는 거대 신문사들의 이념공세는 기성언론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내는 동인이 됐다.

과학과 기술발전의 산물인 전자 미디어 시대는 이런 개인 저널리즘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개인이 소지한 캠코더나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은 실시간 촬영과 유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인터넷상 포털의 위력은 개인 미디어 생산자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해서 기성 미디어를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상의 보도가 기성언론의 이어받기식 보도로 더욱 강력한 사회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수순을 되풀이 했다. 전자 민주주의의 위력과 발전을 보는 듯 했다.

기성 미디어의 보도에 식상해하던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개인 미디어의 위력은 배가됐다. 퍼나르기와 새로운 영상 등은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힘이었다. 그러나 기성 미디어를 대체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던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빛을 잃는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다.

개인 미디어의 최대 약점은 전문성 부족이었다. 기성 미디어가 몇 차례에 걸쳐 게이트 키핑(gate-keeping) 과정을 거치며 정제된 정보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그런데 개인 미디어는 게이트 키핑 과정없이 그야말로

개인 혼자서 취재, 보도, 편집, 유통시키는 ‘일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안고 있었다. 아무리 신선하고 훌륭한 뉴스감이라 하더라도 저널리즘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타인에 대한 인격권을 지켜주지 않을 때 약재가 되는 법이다.

시위대와 구타논란 과정에서 전경의 신원이 노출 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잘못을 범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최대 약점인 ‘믿거나 말거나’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의 유통 문제는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대생 사망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유통되기도 했다. 이런 괴담 수준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 개인 미디어는 설 곳이 없어진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건강한 공론의 장인 인터넷이 유언비어와 괴담 유통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합리적 진보의 목소리는 수용하되 ‘낮에도 촛불을 들어 사회를 마비시키자’고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극렬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애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개인 간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쇠고기 파

문 수사와 관련한 수사진행상황을 보면 작은 문제가 큰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 같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이처럼 극히 일부의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정보 유통 때문에 크게 훼손될 위험성에 놓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2. 개인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향후 개인 미디어는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인터넷상에서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각 개인 표현의 자유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지만 그 누구도 선불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발달과 미디어의 다양화, 다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가 보다 신뢰받는 대중 미디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개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와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 역할도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1) 저널리즘의 기본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 미디어도 당당한 미디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충족시켜야 한다. 저

널리즘의 기본이라면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킨다는 것이다. 취재, 보도의 자유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도에 따른 전적 책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보도뉴스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저널리즘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시위 가담자이면서 동시에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개인 미디어의 주관성과 편향성 시비는 바로 이런 정보생산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어디서부터 의견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존중돼야 한다. 또한 ‘놀라운 사실’, ‘새로운 영상’ 등을 공개할 때는 그 근거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본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내가 본 것’, ‘내가 찍은 것’은 진실의 일부를 구성할 수는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요건인 사실관계의 확인과정, 사실과 의견의 구분, 형식적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 등은 개인 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 미디어 신뢰확보의 전제조건이 되며 정보전염병을 차단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적 실무지식이 필요하다.

개인 미디어도
 당당한 미디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해야

개인 미디어의 위험성은 법적 책임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제작의 전문성과 언론법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또 다른 사회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 미디어의 위험성은 의욕이 앞서고 신속하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검증과 확인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인 미디어는 책임보다는 도발을, 보호보다는 공개를 우선시한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한 개인에 집중되는 만큼 기성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개인 미디어 제작의 유용성이나 책임성, 법적 보완책 등을 연수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드물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따지는 법제는 더욱 다양화되는 데 비해 개인 미디어의 자기보호 장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 미디어의 유용성과 역할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신용권 훼손 등 미디어가 자주 범하는 개인 법익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언론중재위원회가 다양한 실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유사 상황에 대입해보는 것도 큰 교육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 연구 등은 개인 미디어 보호차원에서 필수정보가 될 것이다. 법적문제는 향후 개인 미디어의 발전과 퇴보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뒤편에서 따로 진행하고자 한다.

3) 게이트 키피ng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 미디어는 혼자서 취재와 보도, 편집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일인 미디어를 의미한다. 이것은 몇 차례 검증과정을 거치는 대중 저널리즘에 비해 신속한 측면은 있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인 미디어에 게이트 키피ng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논의해보자.

방송뉴스나 취재물의 경우, 취재기자 외에 영상 쪽 담당 피디와 부,국장 등은 내용의 정당성과 취재의 균형성 등도 살피지만 법적 위배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전담 변호사의 자문까지 얻어서 보도여부를 판단할 정도다. 최소한 서너 차례 검증과정을 거치며 그 내용은 영상의 노출 정도, 보도의 정당성과 법적 위배 여부, 사회적 책임, 신속보도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정상을 참작 받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미디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혼자서 비전문가가 제작하더라도 그 영향력과 파급강도는 대중 미디어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똑같은 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인 미디어 생산자는 매우 위험한 저널리즘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일인 미디어도 어떤 형

태로운 게이트 키핑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보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인 미디어 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게이트 키핑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를 게재하는 포털 등 관련책임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일인 미디어가 온라인을 타고 빠른 시간에 전파되고 이를 기성 대중 미디어가 확산 전파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순식간에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기사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인 미디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경우 그 사회적,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일인 미디어가 져야한다. 게이트 키핑 없는 저널리즘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일인 미디어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3. 법적 과제

최고기 파문에 따른 촛불시위로 개인 미디어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새롭게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개인 미디어의 창구역할을 했던 아고라 운영자는 구속됐다. 사이버상의 모욕죄 등은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실명제를 강화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다. 이명박 정권 초기 광화문

을 비롯한 전국을 뒤흔든 촛불시위에 놀란 정부는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해서 인터넷이 시위문화화를 주도, 확산시키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끈질기게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가담자들을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많은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익명의 제보와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이 그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언론 정책은 일인 미디어가 설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학계

에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9일 (사)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 되며, 인격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신문법·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에 혼재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뉴스를 선별·배치하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언론중재법상의 권리와 의무주체로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김학웅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법원들은 ‘익명은 한 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법정형에 정한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자칫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일인 미디어, 스트리트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통제방법이 다각도로 모색되며 여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는 통제기제를 개발하고 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찾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하게 되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인터넷은 진화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통제와 일방적 소통이나 억압만으로 국정을 펴나가는 데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III. 결론 및 제언

일인 미디어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시켰다. 일인 미디어의 신선한 충격은 기성 미디어의 반성과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을 노출시켜 국가적 통제권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결론은 단순하다. 일인 미디어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은 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역기능을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자칫 순기능마저 억압하는 무리한 개입과 억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벌써부터 ‘방송통신심의위는 온라인 표현심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선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되는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가기관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같을 리 없다.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일인 미디어 차원에서 자기 규제를 위한 자율규정 제정 등이 모색돼야 한다.

국가의 개입은 최후에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논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